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663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신성범·최수진·김예지

주호영 • 박충권 • 조은희

김태호 · 임이자 · 김승수

이성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점화된 통신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 (알뜰폰)가 도입되었음. 알뜰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들이 통신시장에 진입('20년 45개→'24년 57개)했고 알뜰폰 이용자들도 지속적으로 증가 (휴대폰 가입자 기준 '20년 약 610만 회선→'24년 8월 약 942만 회선) 해오고 있음. 특히, '24년 8월 기준 전체 휴대폰 서비스 가입자의 16.5%가 알뜰폰을 이용하는 등 저렴한 요금으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통신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상황임.

하지만, 알뜰폰 시장의 상당 부분을 이동통신사(도매제공사업자)의계열회사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인해이동통신사 계열회사가 아닌 알뜰폰사(독립계 알뜰폰사)들의 경쟁력이미약한 수준이며, 특히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생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임.

이에, 중소사업자들의 성장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독립계 대·중소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 계열회사들과 요금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정부가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50% 이내에서대통령령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또한,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와 독립계대기업 알뜰폰 사업자 간, 또는 전체 대기업 알뜰폰 사업자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에 차등적으로 등록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알뜰폰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아울러,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산정하는 도매대가를 정부가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규제 방식은 '25년 3월 29일까지 유효하고 이후 정부의 사후 검토 방식으로 바뀔 예정임. 하지만,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어려운 이동통신 시장 환경에서 이동통신 3사의 과점 체제 고착 상태가 심화될 것이 예상되며, 알뜰폰 사업자와 이동통신사 간 현저한 협상력 차이와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 성장해 나가는 것이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우려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대가를 사전에 검증하는 방식으로 다시 복원하고자 함(안 제38조의2제4항, 법률 제198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및 제2조 삭제).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①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시장의 공정경 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동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하는 사업자의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입자 수의 상한에 대한 기준을 두어해당 사업자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상한에 대한 기준은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 전체 가입자 수(사물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는 제외한 다)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 중 대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대기업계열회사와 그 외 사업자 간에 제6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차등적으로 붙이거나,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이미 부가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부가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사전에 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출 및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198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및 제 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제 4항과 법률 제198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제38조의2(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유) ④ 제38조제5항 및 제6항에도 <삭 제>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협정이 도매제공 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도매제공의 무사업자에게 그 해당하는 내용 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신고가 접수된 협정에 따른 도매제공 대가가 소매요금, 회 피가능비용(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 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비용을 말한다) 및

도매제공량 등에 비추어 동일

한 협정 상대방과 체결하여

이미 신고된 협정에 따른 도

제38조의2(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

아

매제공 대가에 비하여 부당하 게 높아지는 경우

2. 그 밖에 도매제공의 범위와 조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제38조의3(이동통신서비스 재판 매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동통신서 비스를 도매제공하는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2호 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 하 같다)의 가입자 수의 상한에 대한 기준을 두어 해당 사업자 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상한에 대한 기준은 이동통신서 비스 재판매 시장 전체 가입자 수(사물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는 제외한다)의 2분의 1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동통신서 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 중 대기업(「대·중소기업 상생협 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_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대기업 계열회 사와 그 외 사업자 간에 제6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차등적으 로 붙이거나,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이미 부 가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기존에 부가된 조건을 변경 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자 및 관 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법률 제198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 2. (생략)

3. 제3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5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의2제3항 의 개정규정 중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부분은 같은 개정규 정 시행 이후 1년간 효력을 가 진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수 산출 및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사업자의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법률 제198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

-----.

1. •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